

3-2

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

사업구분	임기구분		사업주체			신규여부		예산구분		총예산액 (백만원)
	임기 내	임기 외	국가	국가자체	자체	신규	지속	예산	비예산	
	○				○		○	○		

I 중앙정부 도움 (권한 명확성)

○ 해당없음

II 현황 및 정책목표

[현황] < 제2기 처우개선 단일임금 : 보건복지부 인건비권고 기준 적용 >

○ 단일임금체계: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0% 적용

- 시비시설 2021년 100% 달성완료 / 국비시설은 2023년까지 100%적용 달성예정
- 권고기준 100%시설은 특별수당 폐지 및 복지포인트제 시행(2022년, 연 15~20만원)
※ 실질임금 감소가 없도록 특별수당의 50%를 1년간 한시 지급(2022년)

○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분리 지원 시행

- 1기 처우개선(2개 유형): 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관
- 2기 처우개선(7개 유형): 노인복지관, 노숙인재활시설, 노숙인자활시설, 노인주거복지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요양시설
※ 기타 시설도 인건비 권고기준 달성 시 분리지원 권장

[정책목표] < 광주형 단일임금 : 복지부,여가부 시설에 형평성 있는 단일임금체계 마련 >

- 제2기 처우개선(안)은 2023년까지 모든 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%적용을 목표하므로 단일임금체계는 현행을 준수
- 모든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원에과 유사경력 인정방안 확대운영으로 종사자의 안정된 근로여건 강화

Ⅲ

정책개요

○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
- 「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5조

⇒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

○ 사업기간 : 2022년 ~ 2026년

○ 지원대상 : 634개소 (시비지원시설 192, 국비지원시설 442)

(기준: 2022. 6. 30.기준)

(단위:개소,명)

구 분	시설수	복지건강	여성가족	종사자수	복지건강	여성가족
합 계	634	219	415	3,508	2,080	1,428
시 비	192	172	20	1,487	1,118	369
국 비	442	47	395	2,021	962	1,059

※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‘어린이집’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‘노인의료복지시설’과 ‘재가노인복지시설’은 제외

○ 사업예산 : 516,726백만원 ※ 여성가족교육국 단일임금 투입예산 미포함

○ 추진내용

- 제2기 처우개선(안)은 2023년까지 모든 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%적용을 목표로하므로 단일임금체계는 현행을 준수
 - ※ 단, 여성가족부 소관 ‘호봉제 미적용 시설’은 별도로 처우개선안을 마련
- 제2기 처우개선 성과평가와 광주형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‘처우개선 민·관TF’를 구성·운영하여 촘촘한 처우개선 마련
- 시설별 ‘정원’ 기준을 준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제3기 처우개선 수립시 검토
- 청소년 시설등 유사경력 인정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

IV

추진계획

- ‘처우개선 민관TF’ 구성 및 운영 : ’22. 9.~’23. 6.
 - 제2기 처우개선 모니터링 및 처우개선 실태조사
 - 제2기 처우개선 추진결과 성과평가 및 분석
 - 광주형 단일임금체계 구축 방안 모색
- 제2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(임기2년) : ’23. 3.~’25. 3.
-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(안) 마련 : ’23. 4.~11.
- 광주형 단일임금체계 구축 추진 및 단계별 시행 : ’24. 1.~’25.12.
- 광주형 단일임금체계(안) 마련 : ’26.상반기

[연차별 추진일정]

(단위 : 분기)

세부 추진상황	2022년		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
처우개선 민관TF 구성 및 운영																					
제3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																					
제3기 처우개선(안) 마련																					
광주형 단일임금체계 구축 및 단계별 시행																					
광주형 단일임금(안) 마련																					

[연차별 소요예산액]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계 (a=b+c+d)	기투자 (b)	임 기 내						임기후 (d)
			소계(c)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
계	516,726	0	516,726	96,193	100,122	103,130	107,039	110,242	0
국비	0		0						
시비	516,726		516,726	96,193	100,122	103,130	107,039	110,242	
구비	0		0						
민자등			0						

※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예산은 미포함

[예산확보내역]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총 확보액	임기전 확보액	임기내 확보액				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계	213,365	0	101,115	112,250	0	0	0
국 비	0			0			
시 비	213,365		101,115	112,250			
구 비	0			0			
민자 등	0			0			

[집행실적]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총 집행액	임기전 집행액	임기내 집행액				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계	101,115	0	101,115	0	0	0	0
국 비	0						
시 비	101,115		101,115				
구 비	0						
민자 등	0						

V

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구분	총실적/ 목표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임기후
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달성	목표	100%	시비100% 국비97%	시비100% 국비100%	시비100% 국비100%	시비100% 국비100%	시비100% 국비100%	
	실적	100%	100%					
인건비·운영비 예산 분리지원(유형별)	목표	30	3	8	20	30	30	
	실적	11	3	8				

VI

추진실적

-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정 대토론회 개최 : '22.10.25.
- 처우개선 민·관·정 T/F 구성 : '22.11. 7.
- 처우개선위원회 조례개정 : '23. 1.30.
- 처우개선 민·관·정 T/F 1차 간담회 : '23. 2.17.

VII

기대효과

- 모든 시설의 임금격차를 완화한 광주형 단일임금 마련으로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안정된 근로환경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 도모
- 종사자의 안정된 인건비 보장과 형평성 있는 처우를 통해 이직률 최소화 및 종사자 역량강화 제고

주관부서명	돌봄정책과	실·과장	손옥수 (3210)	팀 장	송정태 (3230)	담당자 (전화번호)	이명성 (3233)
-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